

역사칼럼

‘한국사관(韓國史觀)’은 없는가?

역사는 인문학의 한 분야이다. 고로 학문으로 연구·공부하고 가르치며 현실에 적용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중·일 삼국이 동북아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 또 삼국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공동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하건만 중국과 일본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여 주변사관만 더듬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이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역사를 오롯이 학문 영역에만 놔두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중화사관(中華史觀)과 일본의 대화사관(大和史觀)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관(主體史觀)이 대표적인 것들

이다. 이들 중·일·북한은 역사를 ‘민족의 혼’이라는 전제 하에 정치의 한 수단 즉 국민의식의 세뇌 수단으로 이용하며 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 철저한 민족주의 사관으로 정착해 국민을 단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내외로 천명한 사관이 없다. 역사학계는 정치권에서도 한민족의 역사를 한 마디로 규정하고, 후대에 교육하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사관의 명칭이 안 보인다. 물론 홍익인간이라는 의미심장한 역사적 상징어가 있지만 홍익인간사관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사회는 실증주의 사관에 투철해야 한다며 역사기록과 유물유적만 따진다. 신화와 전설도 모두가 역사인

데, 오로지 문자기록과 삶의 흔적만 중시하고, 그것도 한반도 안에서만 찾는다. 우리 조상이 수천년 간 살며 활동했던 중원대륙과 시베리아, 만주, 일본열도는 아예 우리 역사에서 잊혀놓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한일병탄 이래 약 100년을 헤매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 고대사를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요하홍산문명’까지 중화문명으로 편입되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압록강 입구의 단둥을 지나 평양까지 연결되었건만 역사학계나 정부나 모른 채 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 땅이 중국영토로 채색된 역사책이 나오고, 독도는 일본영토로, 일본 종군위안부는 성매매자로 전락하고 만

게 현실이다.

역사를 빼앗기면 민족의 혼을 빼앗기는 것인데, 역대 어느 정부도 이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과 감성, 창의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역사를 빼앗기고도 침묵하고, 심지어 일부는 우리 역사를 저급하고 무지한 신화와 전설로 치부하고 있어서야 어찌 미래를 열 것인가.

이제라도 식민반도사학에서 벗어나 우리의 민족사학을 되찾아야 한다. 한민족사관이야말로 통일을 이끄는 민족혼이 되고, 동북아 역사전쟁에서 굴하지 않을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노희상 | 자유통일연구원장

통일광장 ①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헌법은 통일국가로 가는 이정표

통일한국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규범 통일헌법 논의는 미룰 수 없는 과제

헌법은 규범으로서의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한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한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할 때,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통일헌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통일헌법 없이는 통일의 달성도 통일국가의 유지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이 갖는 절대성과 최고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 사회적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헌법적 가치를 확정하는 통일헌법이나 통일헌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낮은 것은 문제이다. 우리의 헌법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통일을 대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헌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 논의를 통일친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통일한국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통일의 이정표가 될 통일헌법과 헌정제도에 대한 관심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헌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정방식, 통일국가의 권력구조, 여타 통일법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헌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헌법의 기

본이념과 구성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헌법의 기본이념과 정신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헌법 체계에 고스란히 담아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헌법의 기본이념과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국가 건설임은 자명하다.

둘째, 통일헌법의 제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통일헌법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는 헌정질서의 구축이다. 통일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을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북한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통일헌법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나, 남북한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일치 시킨다는 점에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 과제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규범하는 통일헌법의 제정이다. 사진은 평양 시내의 주민들.

함께 논의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고수하는 한 북한헌법의 수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통일헌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헌법은 국가체제를 단일 국가체제로 갈 것인지 연방 국가체제로 갈 것인지,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를 할지, 의회제도는 단원제로 할 것인지, 양원제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넷째,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는 관련 통일법제와의 연계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법제의 정비에는 남북한의 각종 법률과 규범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통일법제는 통일과정이나 교류협

력에 필요한 법제도, 다가올 통일시대에 통일국가를 규율하는데 필요한 법제도, 통일이후 통일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에 대한 지향과 당위성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이상, 통일헌법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논의는 미뤄 둘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김윤태 | 통일전략연구소장, 통일학 박사

본 기사는 <자유마당> 2017년 2월호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